

#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호평, 김소영, 김기대,  
유 용, 이광호, 채인묵, 정진술,  
김경영, 권영희, 김경우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·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,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를 자율성·다양성·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주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.

-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,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함 (안 제6조제3호)

## 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 
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첨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, 시민의 권리와 의무, 참여와 책임, 의사소통,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조정,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민주시민교육 내용)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시민의 권리와 의무</u>, 참여와 책임, 의사소통,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조정,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</p> <p>4.~5. (생략)</p>	<p>제6조(민주시민교육 내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</u> 및 <u>주민주권의 이해, 시민의 권리와 의무</u>, ----- ----- -----</p> <p>4.~5. (현행과 같음)</p>